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행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·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매년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학원,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아동학대 전과자들의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
○ 특히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8곳에서 총 230명의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,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.

○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구김 없이,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
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